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
----------	-----

발의연월일 : 2016. 6. 20.

발의자 : 양승조 · 오제세 · 박영선

김현미 · 심재권 · 이재정

윤소하 · 원혜영 · 이언주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와”를 “이사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을 “이사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를”을 “이사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명예총재”를 “명예이사장”으로, “명예부총재”를 “명예부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를 “명예이사장과 명예부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총재는”을 “명예이사장은”으로, “명예부총재는”을 “명예부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재”를 “이사장”으로, “부총재”를 “부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재는”을 “이사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총재는 총재를”을 “부이사장은 이사장을”로, “총재가”를 각각 “이사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재의”를 “이사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이사장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p> <p>1. · 2. (생 략)</p> <p>3. <u>총재가</u>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p> <p>② 전국대의원총회는 <u>총재와</u>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p> <p>1. ~ 4.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총재가</u>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u>총재는</u>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이사장이</u>-----</p> <p>-----</p> <p>② ----- <u>이사장과</u></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이사장이</u> -----.</p> <p>-----</p> <p>----- <u>이사장은</u></p> <p>-----.</p>
<p>제11조(중앙위원회) ① (생 략)</p> <p>9. 그 밖에 <u>총재가</u>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중앙위원회는 <u>총재를</u> 포함</p>	<p>제11조(중앙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9. ----- <u>이사장이</u> -----</p> <p>----</p> <p>② ----- <u>이사장을</u>----</p>

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총재가</u>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u>총재는</u>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 ----- <u>이사장이</u> -----. ----- ----- <u>이사장은</u> -----.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u>총재를</u>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안전행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 <u>이사장을</u>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위원회는 <u>총재가</u> 소집한다.	④ ----- <u>이사장이</u> -----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u>총재는</u>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u>이사장</u> 은----- ----- -----.

<p>② (생 략)</p> <p>제14조(<u>명예총재</u> 및 <u>명예부총재</u>)</p> <p>① 적십자사에 <u>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u> 각 1명을 둔다.</p> <p>② <u>명예총재는</u> 대통령이 되고 <u>명예부총재는</u> 국무총리가 된다.</p> <p>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u>총재</u> 1명, <u>부총재</u>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p> <p>② (생 략)</p> <p>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u>총재는</u>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u>총재의</u>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p> <p>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u>총재는</u>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u>명예이사장</u> 및 <u>명예부이사장</u>) ① ----- <u>명예이사장과 명예부이사장</u>----- --.</p> <p>② <u>명예이사장은</u>----- --<u>명예부이사장은</u>----- ---.</p> <p>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 ----- <u>이사장</u>-----<u>부이사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이사장은</u>----- ----- -----.</p> <p>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u>이사장의</u>----- ----- ----- -----.</p> <p>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u>이사장은</u>----- ----- -----.</p>
--	---

<p>② <u>부총재는 총재를</u> 보좌하며, <u>총재가</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총 재가</u>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19조(사무처) ① (생 략)</p> <p>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u>총재의</u>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다.</p> <p>③ 사무총장은 <u>총재가</u> 임명하 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p>	<p>② <u>부이사장은 이사장을</u>----- -----<u>이사장이</u>----- ----- ---<u>이사장이</u>-----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이사장의</u>----- ----- ----- ---.</p> <p>③ -----<u>이사장이</u>----- ----- -----.</p>
--	---